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하자보수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북구

훈계대상자 영도구 ○○○○과(전 북구청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5. 7. 13.부터 2016. 3. 7.까지 북구청 ○○○○과에서 근무하면서 ○○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준공 후 벽면 누수 등 지속적인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과)에서는 2013. 12. 27. ○○시장 시설현대화사업(7차) 건축공사”를 ○○종합건설(주) 외 1개사와 1,027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4. 10. 11.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준공 후인 2014. 12월부터 공사설치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자 수차례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17. 3월 감사일 현재 까지도 벽면 누수 등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담보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절1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보상 업무처리지침」 제2절4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넘는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 귀속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시장에 설치한 아케이드(7차)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업무를 하면서 2014. 10. 11. 공사 완료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14. 12. 12. 아케이드 전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하자발생에 따른 1차 하자보수 지시 이후 누수 하자가 재 발생하였으며 반복적인 누수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하자보수 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하자발생원인 분석 및 보수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1차 하자보수지시 이후 하자 발생 원인분석 및 보수방법 재검토를 하지 않고 6차에 걸쳐 누수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지시만 반복 하였을 뿐 근본적으로 하자 치유가 되지 아니하여 누수하자가 재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하자 보수한 부분들에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인들이 철저한 하자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2015. 8. 25.(4차), 2015. 10. 2.(5차) 등 2차례에 걸쳐 시공업체에 형식적인 보수공사 지시만을 함으로써, 누수에 대한 하자조치가 지연되었고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개월 여간 관련 업무를 방치하였고, 이후 ○○종합건설의 당좌 거래정지로 인하여 더 이상 하자보수지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최초 하자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한 2016. 12월에서야 후임 담당자가 전문기관에 “하자진단용역”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그 동안 ○○시장 아케이드 구간 내의 상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조치되지 않는 등 행정의 불신을 초래 하였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금을 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 귀속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 하는 등 ○○시장 시설현대화사업(7차) 건축공사의 아케이드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누수하자의 원인분석 및 보수방법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자진단 용역”을 (주)○○구조기술단과 2016. 12. 20. 계약(3,350천원)하여 2017. 2. 28. 준공하여 하자진단용역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그러나 동 용역 수행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당시 시공관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의견 청취를 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2017. 2월 제출한 하자진단 보고서 요약문 미·오시공 3개 항목(자동개폐장치 롤러 설치 위치 변경 시공, 물받이 규격 축소, 우수관 규격 축소)에 대하여 잘못 조사하였다고 정부합동감사시 건축감리자(건축사사무소 ○○)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 한바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 최종 하자 진단 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는 등 하자진단용역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복구(영도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빗물 누수 등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정확한 원인 진단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간 방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